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

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사안의 개요

-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 (2) 동영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처
-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입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천6백만원 받음 -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공범들이 Y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경고문을 보내도록 한 행위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고문을 변호사가 대행하여 발송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즉, 애초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요구할 목적으로 합정카페를 만들어 등업의 조건으로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 뒤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고, 변호사가 대행하여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애초에 이 사건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AL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고하였고, 실제로 AL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때문에 이 사건 고소대리를 사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피해자가 1,000명 이르고, 공갈 피해자가 170명, 공갈미수 피해자가 4명에 이르며, 공갈 피해금액이 3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무고 및 공갈의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도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L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이 주도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F이 취득한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F에게 AL 변호사의 경고를 전달하면서 공갈 행위를 말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십수년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